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17
----------	-----

2016년 2월 25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성중기의원
- 나. 발 의 일 : 2015년 11월 26일
- 다. 회 부 일 : 2015년 11월 30일
- 라. 상 정 일 : 제26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6년 2월 25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성중기의원)

### 가. 제안 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는 서울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각 요율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,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,000분의 50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.

- 하지만 다른 조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요율을 정하면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의 달리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간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바, 조례간의 상충과 조례 해석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함(안 26조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동 조례 및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여,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현행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<sup>1)</sup>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는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, 동 조례 및 타 조례에서 재산에 따라 대부료 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동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에 대한 조례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지난 제264회 정례회 중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가 개정되어, “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는 규정(제1조의2)이 신설된 바,<sup>2)</sup> 이미 대부료 요율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간의 조화를 이룸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·충돌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

2)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(시행 2016.1.7. 서울특별시조례 제6064호)」 제1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[본조신설 2016.1.7.]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6조제1항 중 “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”를 “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<u>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</u>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공유림 등을 광업·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,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.</p> <p>②~⑥ (생략)</p>	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----- -----<u>이 조례</u> <u>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~⑥ (현행과 같음)</p>